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9. . . (제 회)	

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연월일	2019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하고, 이에 따라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도입되었던 조정점수를 폐지하며,

종전 청각장애 2·3급에게 별도로 적용되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8·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 변경(안 별표1)

- 1) 행정직군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·과학·수학 과목을 제외하며,
- 2) 일반행정 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 내 다른 직류에 포함되어 있던 행정학개론을 제외함.

나. 8·9급 공채 제2차 시험 조정점수 적용 근거규정 삭제(안 제32조제4항, 제32조제5항 삭제, 안 별표13 삭제)

제2차 시험과목이 필수과목화 됨에 따라, 종전 선택과목 하에서 과목 간 편차조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조정점수를 폐지함.

다.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별도 기준점수 적용

대상 근거규정 변경(안 별표3, 별표3의2)

- 1) 「장애인 복지법」 개정(법률 제15270호, 2017. 12. 19. 공포, 2019. 7. 1. 시행)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,
- 2) 청각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(2·3급)을 청각장애로 변경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4항·제5항을 삭제한다.

별표 1의 교정 직렬 교정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교정학개론, 형사소송법개론
----	----------------

별표 1의 보호 직렬 보호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형사소송법개론, 사회복지학개론
----	------------------

별표 1의 검찰 직렬 검찰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형법, 형사소송법
----	-----------

별표 1의 마약수사 직렬 마약수사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형법, 형사소송법
----	-----------

별표 1의 출입국관리 직렬 출입국관리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행정법총론, 국제법개론
----	--------------

별표 1의 철도경찰 직렬 철도경찰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형사소송법개론, 형법총론
----	---------------

별표 1의 행정 직렬 일반행정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
----	--------------

별표 1의 행정 직렬 인사조직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행정법총론, 인사·조직론
----	---------------

별표 1의 행정 직렬 법무행정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행정법총론, 민법총칙
----	-------------

별표 1의 행정 직렬 재정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경제학개론, 회계원리
----	-------------

별표 1의 행정 직렬 국제통상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국제법개론, 경제학개론
----	--------------

별표 1의 행정 직렬 운수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경영학개론, 철도법개론
----	--------------

별표 1의 행정 직렬 고용노동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노동법개론, 행정법총론
----	--------------

별표 1의 행정 직렬 문화홍보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문화사, 커뮤니케이션이론
----	---------------

별표 1의 행정 직렬 교육행정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교육학개론, 행정법총론
----	--------------

별표 1의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경제학개론, 회계학
----	------------

별표 1의 세무 직렬 세무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세법개론, 회계학
----	-----------

별표 1의 관세 직렬 관세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관세법개론, 회계원리
----	-------------

별표 1의 직업상담 직렬 직업상담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노동법개론, 직업상담·심리학개론
----	-------------------

별표 1의 사회복지 직렬 사회복지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사회복지학개론, 행정법총론
----	----------------

별표 1의 통계 직렬 통계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필수	통계학개론, 경제학개론
----	--------------

별표 1의 사서 직렬 사서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선택	자료조직개론, 정보봉사개론
----	----------------

별표 1의 감사 직렬 감사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“선택”란을 “필수”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선택	행정법총론, 회계학
----	------------

별표 3의 비고 제2호와 별표 3의 2 비고 제2호 중 “청각장애(2·3급)”
을 “청각장애”로 한다.

별표 13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, 제32조제
4항, 제32조제5항, 안 별표13 개정규정 중 행정직군 시험과목 변경에
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
정에 따른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재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-8204